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5. 4. 3.(금) 09: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5년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13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아울러 제13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2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 극동여수 FM방송국(2015-14-056)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4년 5월에 접수된 (재)극동방송의 극동여수 FM방송국에 대한 허가심사 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허가신청 현황을 말씀 드리면 신청인은 (재)극동방송이 되겠으며, 심사대상은 극동여수 FM방송국으로서 주파수는 97.5MHz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방송구역은 여수, 순천, 광양시의 일원과 하동, 남해, 고흥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허가심사위원회 구성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께서 결정하겠습니다. 분야별 심사위원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기준 및 배점입니다. 방송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기독교 복음 전파를 위해 지역 FM 라디오방송국이 개설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신규 방송국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점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항목별 배점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허가 여부 결정 기준입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획득한 신청인에 대하여 ‘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신청인에 대해서는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4월에는 청취자 의견청취를 하고 5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허가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맡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참고로 말씀 드리면 방송정책국에, 오늘 보고 드린 2건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유선방송 쪽의 사전승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 동의 부분 그리고 DMB 재허가를 포함해 7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분담해서 위원장을 맡으실지 그 안은 별도로 마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위원장을 상임위원 중에 누가 맡도록 할지 의논을 하시겠지만 제가 금방 들으니까 생각이 난 것이, 무작위로 위원장을 맡도록 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DMB 재허가를 어떤 위원님이 한 번 맡으셨다면 DMB에 관련된 부분을 그분이 쪽 맡아서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거나 또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동체라디오 재허가 심사를 한 번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을 고려해서 어느 위원님이 맡으시면 좋을지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 안전에 대해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극동방송은 7명이고, 교통방송은 8명입니다. 교통방송의 경우에는 법률분야가 빠져 있는데 특별히 그렇게 차이를 들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신규 극동 FM을 허가하는 쪽에는 법적인 검토사항에 대해 특별히 요구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교통방송은 재허가하는 부분으로 과거의 방송법령 준수 여부나 조건 이행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명을 더 넣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확실한 이행을 위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확실한'이라는 말이 필요합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제가 봐도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보기에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이 신규 허가이지 않습니까? 작년 5월 30일 허가신청을 했는데, 물론 미래부 기술심사 결과를 받는 데도 6개월, 또 방통위에서 사업계획서 보정을 요청하는 등 허가심사에 들어가기까지 10개월이 걸린 것 같습니다. 미래부의 기술심사는 결국 가용한 주파수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 지역의 타 방송국과 혼신, 간섭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진 것 같은데 이토록 시간이 오랜 기간 동안 경과한 이유가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미래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 요즘에 주파수가 많이 포화되다 보니까, 지상파방송이라면 모든 여수지역의 시민들이 공정하게 다 들어야 하는데 주파수 부분 관련 면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방송구역을 옮기거나 주파수를 바꿔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미래부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요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즘'이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TV든 라디오든 방송주파수, 특히 FM방송 주파수는 그 가용한 주파수를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방송구역을 보니까, 아마 전파법상으로는 행정구역과 방송구역을 가급적이면 일치시키려고 해 왔던 것 같은데, 신청한 '여수, 순천, 광양' 방송구역과 '일부 하동, 남해, 고흥'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해당 지역의 인구 대비, 면적 대비 기준을 50% 이상 도달하지 못 한다 해도 전파의 특성상 생활권역을 넘어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일부'라는 명칭으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방송구역과 행정구역을 가급적 일치시키는 것이..., 왜냐하면 방송구역 일부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부는 듣고 대부분은 못 듣고, 그것이 오히려 서비스를 잘하는 것 같지만 잘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것이 기술적으로 방송국을 설치할 때 주파수가 스퍼로버(spillover) 되지 않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주파수가 자연상태 그대로 다른 구역까지 도달하게..., 그런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도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부에서 기술심사결과 회신한 내용 중 특이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이번 건에 대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미래부는 보통 '적합', '부적합'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상입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앞으로 미래부와 협의해서 행정구역과 전파의 도달범위를 맞추는 방향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기술심사 결과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미래부의 검토 결과는, 다른 인접 방송국과의 혼신 문제의 조정 또는 장비를 다시 튜닝해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기술적합이 나왔다는 뜻은 타 방송국과 혼신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일원'이라 한다면 '여수, 순천, 광양'은 전체가 된다는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전체가 아니고 면적 또는 인구 대비 50% 이상 충족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50% 이상이면 '일원'이라고 표현하고....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면적 또는 인구 대비 50%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일부'는 그 50%가 안 되는 지역을 표시하는 것이고...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충족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여수, 순천, 광양에서는 청취를 못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난청 지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말씀하신 허가신청 현황의 방송구역을 보면 '여수, 순천, 광양 일원'과 '하동, 남해, 고흥'은 일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현재 여수지역은 KBS 쪽에서 FM방송국 1개, AM 1개, 그리고 여수MBC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AM 1개, FM 2개, 그리고 CBS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광주방송 라디오는 이쪽 권역까지 송신이 안 됩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통상 저희가 의견청취도 하겠지만, 심사계획을 준비할 때 사전에 여타 사업자들의 입장들에 대해 먼저 의견청취를 합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가 '청취자 의견청취'라는 것으로 청취자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사업자들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받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사전에 의견을 들어본 것이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극동방송도 광고를 하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극동여수 FM방송국이 광고는 나가고 있지만 자체편성은 없고 주로 서울에서 나오는 광고가 그쪽까지 편성이 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전파료 배분을 통해 재원은 조정이 됩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구체적인 것은 아직 계획이 나와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는 전파료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극동방송은 광고가 주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2015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5-14-057)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2015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2015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12월 31일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도로교통공단의 2개 라디오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재허가 대상은 도로교통공단의 2개 방송국입니다. 교통원주 FM방송국은 주파수 105.9MHz를 쓰고 있고, 원주 일원과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횡성군 일부가 되겠습니다. 교통창원 FM방송국은 주파수가

95.5MHz이고, 창원시 성산구 일원과 의창구, 진해구, 마산회원구 일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도로교통공단의 7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재허가를 해준 바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안은 앞의 건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때에는 심사위원을 8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방송통신위원장께서 결정하시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심사위원 내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항목 및 배점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4년도에 대부분의 방송국을 재허가함에 따라 재허가 심사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작년도에 적용했던 방송국 재허가시 의결된 심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코자 합니다. 재허가 심사항목별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고, 세부심사기준과 평가지침은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항목별 배점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재허가 여부 결정입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에 65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각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거나,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서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오늘 의결해 주시면 6월 중에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이후에 청취자 의견 접수 및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1월 중에 재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작년에 도로교통공단 제주FM을 허가하지 않았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것은 신규허가라서 재허가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도로교통공단에 9개 방송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까지 포함하면 10개가 되는데 금년에 2개 하고, 또 3년 뒤에 7개 하고, 또 4년 뒤에 1개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개 방송사당 다수 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을 일치시키는 행정적인 작업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허가기간이 3년, 4년으로 다른데, 같은 법인에서 한 번에 허가를 받으면 편리하고 효율적일 수 있지만, 사실 4년이라는 것은 재허가 점수가 좋은 우수한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므로 그런 측면과 약간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일단 인센티브를 부과한 부분은 계속 있는 것인데, 만약 해당 법인으로부터 그런 편의를 위해 허가기간을 맞춰 달라는 요청이 오면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허가기간을 줄여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

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요즘 규제개혁, 규제완화가 정부의 큰 정책방향인데, 방송사들이 다수의 방송국을 운영하는 경우에, 재허가를 해 주는 방통위도 그렇고 신청을 하는 방송사도 그렇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아까 정종기 국장께서 보고 하실 때 '확실한'은 읽지 않으셨는데 '확실한'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확실한'이 들어가려면 재허가 조건을 더 확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한 듯하고..., 여태까지 '확실한'이라는 표현을 관례적으로 쓴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원주와 창원은 4년 전에 다른 7개 도로교통공단의 방송국들과 같이 재허가를 받았는데, 다른 방송국 7개는 허가기간이 3년이 됐고, 원주와 창원은 우수하게 높은 평가를 받아서 허가기간이 4년이 되어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경우에 도로교통공단이 스스로, "업무가 번거로우니까 설사 우수한 점수를 받더라도 4년이 아니고 3년으로 해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맞춰 주세요"라고 하면 저희가 맞춰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으면 허가 기간을 더 길게 해 주는 것을 줄이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염두에 두고 도로교통공단과 상의해서 그런 편의성도 고려가 됐으면 합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3페이지 심사항목 제일 하단에 <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심사 결과 등은 추후 백서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백서를 발표합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어떤 형태로 백서를 발표합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책자 형태로 해서 기본계획에서부터 심사위원회 구성 문제나 심사내용이 세부적으로 다 나옵니다. 다만, 거기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것만 일부 비공개하고 대부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 건에 대해 백서를 작성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단위로 해서 그해에 했던 지상파방송 사업자 허가·재허가에 대해 백서를 발간한다는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건건이 발간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심사가 끝나면 어느 정도 텀(term)을 두고 발표가 됩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보통 지상파는 12월 31일에 끝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연말에 심사가 끝나면 상반기에 정리 해서 하반기 중에 자료를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정리해서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백서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개정되어서 금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위치정보사업 양수·합병 등의 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인가 심사항목 3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업계획서 관련해서는 관련 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영업계획서 및 기술계획서를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모아서 통보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 최대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공내용을 모아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그다음에 모아서 통보하는 횟수 또는 기간, 세 번째는 원하지 않는 경우 즉시 통보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한 후에 동의를 취득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개인위치정보주체가 10회 단위로 지정한 횟수마다 모아서 통보를 하되, 다만 제공한 날로부터 30일이 된 경우에는 지정한 횟수 미만이라도 모아서 통보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10일 단위로 지정한 기간마다 모아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이때 통보할 경우에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제공 목적, 즉시 통보방법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함께 통보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 관련 자료를 국회에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법에서 위치정보심의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시행령상의 관련된 조항을 전부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요건에 '위치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보고안을 접수해 주시면 앞으로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8월 시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모아서 통보한다'는 것이 모법에 들어간 것을 구체화하는 것 같은데 '모아서 통보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기존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 그때마다 즉시, 그 이야기는 곧 한 번, 매번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건건이...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네, 맞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매 회마다 건건이 하던 것을...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건을 모아서, 법에는 횟수를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기간으로 하는 2가지 방법을 규정했지만 건건이 통보하지 않고 모아서 한꺼번에 여러 건을 통보할 수 있도록...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렇게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도 편리하고 이용자 입장에서도 편의성을 도모하고 양쪽에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양쪽 다 그렇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자가 최대 혜택을 많이 보고, 개인의 입장에서도, 물론 매번 건건이 통보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여러 건을 모아서 통보해 주는 것을 더 선호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두 번째는 업무위탁과 관련해서,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하는 것이 '표준' 관련한 것을 위탁하는 것 같은데...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치정보 관련해서 표준화활동, 표준연구, 표준제정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민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 사례는 많지 않고, 공공 부분에서는 긴급구조와 관련된 부분, 위치정보 제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표준'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민간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주로 각자의 기술, 서비스 내용대로 하는 것이지, 위치정보 관련해서 '표준'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물론 법에 표준화 추진에 관한 그 기능을 국립전파연구원에 위탁을 했었고, TTA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법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실제로 실적이 있는지, 국제적으로도 그런 표준화 활동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아직까지 미흡하다 할지라도 지난번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위치정보산업의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니까 미래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R&D 연구개발과 표준화 활동을 미약하나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R&D와 표준화 활동을 직접 하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산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혹시 미흡하다 할지라도 향후에는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라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한 부분에서의 표준화는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다음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박 국장께서 다 이야기해서 제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IT 쪽에서 표준화라는 것은, 결국 이용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위치정보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기술규격이나 포맷이나 프로세스가 다르면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표준화가 필요한 것인데, 위치정보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민간 주도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화의 의미가 때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더 활성화되도록 하려면 이 활동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TTA와 협력해서 '표준'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기주 위원님께서 항상 개인정보 서비스나 관련 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기조에는 공감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페이스북과 관련된 보도가 나왔는데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 등록한 사실이 있습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아직 없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페이스북을 보면, 이용자들의 다수가 PC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같은 기기를 이용해서 페이스북에 접속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의 사업모델이 광고에 기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페이스북이 굳이 PC상에서의 이용자들의 이용행태만 가지고서 광고사업자들에게 광고마케팅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위치정보 등을 수집하고 활용해서 광고영업을 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한 것은 없지요?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타깃광고나 맞춤형광고, 즉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온라인상에서 수행한 일련의 활동들, 말씀하신 위치정보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광고기법을 말합니다. 사실은 많은 부분들에 있어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느냐 여부, 또 그런 정보들을 추적하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활용정보 이용시 개인정보의 침해 여부와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파악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아침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벨기에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만 제목은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정책은 EU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이 회원뿐만 아니라 계정이 없는 비회원들의 웹 경로 추적, 특히 이것을 거부한 이용자에 대해서까지 추적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광고영업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비식별정보를 활용해서 타깃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상 저희 망법상의 규율대상은 아니지만, 만약 특성상 개인식별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개인정보 추적 등에서 오·남용 정도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망법상 규율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만약에 이런 회원·비회원들의 개인정보와 정보이용 동의를 거부한 이용자들의 정보까지도 광고영업에 이용했다면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위치정보보호법까지 아주 종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까 그 의견 그대로입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요즘 특히 모바일 쪽에서의 앱 관련된 사항들이나 또 국내 사업자, 국외 사업자 가리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타깃광고 관련된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실태점검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규율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야기가 자꾸 다른 데로 벗어나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 올해 업무 중에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 개인의 경험이긴 하지만 스마트폰 앱을 다운 받아서 쓰려고 할 때 어떤 경우에는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위치정보, 하다못해 사진정보 이런 것을 다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냐고 물어보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굳이 이 위치정보나 사진정보를 제공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운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가이드라인을 성안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에게서 무심코 동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하고, 그것은 일반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의 다른 목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이니깐 그런 면에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개인 위치정보의 활용 시에는 인권과 제3자 제공 목적 사이에서 마찰과 갈등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노약자나 미성년자 경우의 제3자 제공 목적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사례인데, 예를 들면 보호자가 중·고등학생을 학원에 보냈는데 제대로 다니고 있는지를 부모에게 학원에서 통보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이 이를 거부한다면 교육 목적상이라고 할지라도 보호자에게 출결석 여부를 알려주는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 것입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아동이 학원에 들어갔다는 위치정보를 부모에게 알려주고 그 부모에게 알려줬다는 사실을 아동의 핸드폰에 알려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부모에게 알려주는 것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서비스 자체에 동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어디까지나 학생이 동의해야 가능한 것입니까? 교육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교육목적에 필요해서 그것을 보호자가 신청했을 것입니다.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런데 그것을 그 학원에서 학생에게 '네가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게 된다, 동의하겠느냐?' 그럴 경우에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처음부터 동의해야만 그 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교육목적상 이야기한 것이지만 그것 말고 여러 가지, 사립탐정이나 흥신소 등에서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인권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일정한 기간 모아서 제공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요구하면 건건이 통보할 수도 있지요?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그렇습니다.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정리하면, 기본원칙은 매 건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위치정보 주체가 동의해 주면 모아서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치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해당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오늘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제 핸드폰에 어떤 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쪽 보는데 ‘앨범 만들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과거의 사진이 몇 장 들어가 있기에 한 번 눌러 보니까 위치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앨범을 만드는데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겠느냐고 나오니다. 앞으로 시간을 많이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진흥원에서 우리와 같이 일하는 직원들 또는 전문가들이, 앱이 빌트인 앱(Built-in APP), 임베디드 앱(Embedded APP)도 있을 수 있고, 이용자가 자기가 필요한 앱을 다시 설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스마트폰에 처음 가입하거나 기기변경을 할 때 임베디드 된 앱이라 할지라도 그 전문가들이 쪽 이용하는 과정을 한 번 따라가 본다면 정보통신망법이나 위치정보법에 따른 적절한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 빠른 시간 내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한 것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린 그 과정에서 위치정보 수집 동의를 부당하게 요구한다면 과도한 위치정보수집이라고 했을 때 어느 법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행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서 ‘위법이다, 아니다’를 따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방통위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위치정보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정보통신망법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최소한 개인정보 수집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치정보법은 적용이 안 됩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위치정보법에서 관련된 조항을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정보통신망법상 위치정보,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굉장히 종합적이고 포괄적이고 완벽한 가이드라인 작업을 하기 전에 이통사별로 아니면 단말기별로 샘플링을 해서 그것을 바로 오늘이라도 인터넷진흥원과 점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 위원님께서서는 제가 자꾸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고위원님께서 당연히 위치정보 보호 부분을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이 중요하지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아침에 새삼 겪어봤으니..., 그래서 위치정보법을 자꾸 활용하고, 저희는 2가지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는 2가지 법을 가지고 저희가 얼마든지 점검하고 만약에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야기의 방향이 약간 어긋나긴 했습니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앱의 종류가 많으니까 관련 업무 자체가 방대할 수도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도 이런 개인정보나 위치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이 되고,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위원장님, 아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페이스북의 위치정보 신고 관련된 사항은 신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 신고는 되어 있습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점검하는 것도 문제없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라.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나>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방송기반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이행의 경감 및 유예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 사유는 장애인방송 편성의무의 경감 또는 유예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규범의 실효성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신설하고 기타 오·탈자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고시 개정 추진 경과입니다. 작년 12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시 개정안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고, 금년 3월까지 장애인 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서 3차례 논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7조의2 제1항을 신설하여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 또는 유예의 인정사유와 판단기준을 3가지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1호로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호로 경영상황 등이 별표2와 같은 경우로서 지상파, 위성방송, 보도·종편PP 등 필수지정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상 최근 5년 중 4년 이상 적자 상태로서 자본잠식률이 70% 이상인 사업자 그리고 고시의무사업자인 SO, PP 등의 경우에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사업자로 전년도의 자본잠식 비율의 범위 내에서 다음 연도에 편성의무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예기준은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에 자본잠식률이 100% 이상인 경우에 다음 연도에 유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호는 방송시설, 장비 등에 기술적 장애가 발생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의2 제2항~제4항까지 경감, 유예의 신청 및 결정 절차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감, 유예를 받고자 하는 방송사업자는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은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도 별도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와 별도 협의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사전협의를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 일치를 본 것이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경감기준과 관련해서는 자본잠식비율대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저희 결정을 거쳐 비율을 따로 정하는 것이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고시 제1호가 천재지변과 같은 경우이고, 두 번째가 자본잠식에 따라 경영상 많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세 번째를 그 밖의 사유로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로 했는데, 그 밖의 사유라는 것이 지나치게 포괄적일 수 있어서 그 앞 부분에 예시적인, 아니면 좀 더 제한적인 문구를 요구하는 의견이 행정예고나 관계부처 협의 기간 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적인 사유로'라든지 그 앞에 무엇이 붙어야 하는데..., 제1호와 제2호가 있지만 제3호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행정예고, 부처의견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방송이 불능이 되는 경우를 경감, 유예 사유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앞에 단서를 추가하는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제2호를 제1호로 올리고 제1호와 제3호를 합쳐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했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제1호는 천재지변 등 자연적인 장애를 생각했던 것이고, 제3호의 경우에는 인위적인 것으로 기술적 장애라든지 이런 사항을 생각했던 것인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 고시를 개정하려는 주된 취지가 제2호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현재 고시는 고시의무사업자에 대해서만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라고 아주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고시 개정안 중에 제1호나 제3호보다 제2호가 주된 내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제1호와 제3호는 제가 보기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적을 것 같습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제3호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과거에 있었던 소위 블랙아웃(Black Out), 방송중단 사태가 제3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정전, 단전 또는 방송시설 장비에 기술적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경감하는 기준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장애인방송의 필수지정사업자는 주로 지상파방송사업자이고 이것은 방송법상 규정이지요?
- **김종영 시청자지원팀장**
 - 방송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지상파, 위성방송, 보도·종편PP는 필수지정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고시의무사업자는 고시로 지정된 것입니까?
- **김종영 시청자지원팀장**
 - PP와 SO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고시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필수지정사업자 중에서 자본잠식률이 70% 이상인 사업자, 현실적으로 경감, 유예할 수 있는 사업자가 어떤 방송사들입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현재는 OBS 경인TV가 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하나입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지금 필수지정사업자의 경우에는 1개이고, 고시의무사업자의 경우에는 PP 등 2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찾아보니깐 3년 이상 적자상태인 사업자는 13개 사업자가 있고, 3년 이상 적자이면서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사업자는 4개가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여기는 4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4년 이상이 된 경우에 필수지정사업자는 OBS 1개사, 고시의무사업자는 PP 2개사가 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자본잠식률 개념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하여튼 재정 문제 때문에 재승인·재허가 과정에서 지적을 많이 받거나 그것을 정상화시키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도저히 능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장애인방송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OBS의 경우 장애인방송에 들어가는 재정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수억입니까, 10억이 넘습니까?

○ 김종영 시청자지원팀장

- 약 5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5억 5,000만원 중에 경감하면 얼마나 경감할 수 있습니까?

○ 김종영 시청자지원팀장

- 전년도 자본잠식률 비율이 95%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95%를 다 경감해 준다면 사실상 장애인방송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적어도 전년도에 했던 것은 유지되는 수준에서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최소한의 장애인방송은 해야 할 것이고 부담을 많이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지요?

○ 김종영 시청자지원팀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좋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4월 8일 수요일, 조금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35분 폐회 】